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 입영 기피 행위 등 법정형 상한 상향〉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45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30.

다. 회부연월일 : 2026.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Ⅲ. 검토의견

□ 현행은 병역판정검사 등의 대리수검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병역판정검사 등 불응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영·소집 통지 불응시 3년 이하의 징역, 대리 입영·소집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시키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u>3년</u>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 ----- ----- ----- ----- ----- ----- <u>5년</u> ----- -----.

② (생 략)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

② (현행과 같음)

③ -----

1년-----.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
----3년-----3천만
원-----.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

----5년-----.

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u>3년</u>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u>5년</u>----- -----. ----- ----- ----- -----.
---	---

□ 현행법은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등의 불응, 입영·소집 불응 등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주요 병역면탈 범죄 법정형 내용 >

대상	법정형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병역판정검사 등 불응	6개월 이하 징역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입영·소집 불응	3년 이하 징역
대리 입영·소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병역면탈 범죄에 따른 실제 처벌 및 수사 현황을 보면, 병역판정 검사 등 대리수검 및 대리 입영·소집에 따른 처벌건수가 2건¹⁾이고, 병역판정검사 등 불응에 따른 처벌건수는 318건이고 수사건수도 258건에 달하며,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에 따른 수사건수는 82건이며, 입영·소집 불응에 따른 처벌건수 및 수사건수도 1,080건 및 602건에 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1~'25) 병역면탈 범죄 처벌 및 수사 현황²⁾ >

대상	처벌건수	수사건수 ³⁾	비고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 대리 입영·소집	2	-	경찰 이첩수사
병역판정검사 등 불응	318	258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	- ⁴⁾	82	
입영·소집 불응	1,080	602	

□ 개정안은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면탈 관련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병역면탈 방지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병역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병역면탈 범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그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

1) 병역의무자 1인, 대리 수검자·입영자 1인

2) 세부내용 참고자료 참조

3) 검찰송치, 수사중, 수사종결 건수

4) 수사결과 31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 등 진행 중

하는 것은 병역비리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음.

- 또한 최근 병역면탈 범죄에 새로 포함된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을 제외하면,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을 비롯한 대부분의 병역면탈 범죄의 법정형은 1950~1960년대에 마련된 이후 70년 가까이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범죄 수법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임.

< 병역면탈 범죄 법정형 연혁 >

대상	법정형	연혁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962년 ~
병역판정검사 등 불응	6개월 이하 징역	1957년 ~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4년 ~
입영·소집 불응	3년 이하 징역	1957년 ~
대리 입영·소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962년 ~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관련하여 동 처벌규정은 2024년 5월에 시행된 것으로, 처벌규정의 시행시기가 2년여 정도에 불과한 점과 단속 건수가

법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현황 >

(’26. 4. 30.기준, 단위: 건)

연도	’26. 4월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건수	203	572	2,171	2,858	1,919	3,021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규정 시행(’24. 5.) 이후 게시글 감소

둘째, 대리입영·소집은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2024년에 발생한 사건⁵⁾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 상향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 가능성과 발생 빈도,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정성⁶⁾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 입영·소집 불응 및 대리 입영·소집의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하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것이, 도망·신체손상 등 악의적이고 기망적인 병역기피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불법성과 책임 정도를

5) 2024년 7월경 28세 군필 남성이 다른 20대 남성과 서로 공모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입영한 사건

6) 2024년 대리입영사건의 대리입영자에 대해 1심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주요 병역면탈 범죄 법정형 개정내용 >

대상	현행	개정안
도망, 신체손상 등 병역기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병역판정검사 등 대리수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병역판정검사 등 불응	6개월 이하 징역	1년 이하 징역
병역의무 기피 관련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입영·소집 불응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대리 입영·소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면탈 관련 법정형을 상향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현행 「병역법」 제97조⁷⁾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역면탈 관련 행위에 대한 ①처벌 규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 및 ②입영·소집 통지 불응의 경우 처벌 상한을 7년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입영·소집 통지 불응 시 처벌 상한을 5년으로 상향할 경우 「병역법」 제97조상 가중 규정 또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7) 「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분	개정안	수정안
전시 입영·통지 불응	최대 7년의 징역	최대 10년의 징역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실제 처벌 현황 및 단속 또는 수사 현황

□ 제87조제1항(대리수검)

○ 처벌 현황

(‘21. 1. 1. ~ ‘25. 12. 31., 단위: 명)

구 분	계	징역(실형)					집행유예					선고 유예	벌금
		소계	징역 1년6월 이상	징역 1년이상 ~ 1년6월 미만	징역 6월이상 ~ 1년미만	징역 6월 미만	소계	징역 1년6월 이상	징역 1년이상 ~ 1년6월 미만	징역 6월이상 ~ 1년미만	징역 6월 미만		
계	2	-	-	-	-	-	2	2	-	-	-	-	-
25년	-	-	-	-	-	-	-	-	-	-	-	-	-
24년	2*	-	-	-	-	-	2	2	-	-	-	-	-
23년	-	-	-	-	-	-	-	-	-	-	-	-	-
22년	-	-	-	-	-	-	-	-	-	-	-	-	-
21년	-	-	-	-	-	-	-	-	-	-	-	-	-

* '24년 2명(공범) : 병역의무자 1명과 대리수검자 1명

○ 수사 현황 : 해당없음

*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외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경찰에 이첩 수사

□ 제87조제3항(검사기피)

○ 처벌 현황

(‘21. 1. 1. ~ ‘25. 12. 31., 단위: 명)

구 분	계	징역(실형)					집행유예					선고 유예	벌 금
		소 계	징역 1년6월 이상	징역 1년이상 ~ 1년6월 미만	징역 6월이상 ~ 1년미만	징역 6월 미만	소 계	징역 1년6월 이상	징역 1년이상 ~ 1년6월 미만	징역 6월이상 ~ 1년미만	징역 6월 미만		
계	318	77	20	6	21	30	229	5	12	40	172	12	-
25년	8	-	-	-	-	-	8	-	-	1	7	-	-
24년	82	15	4	2	1	8	64	2	3	7	52	3	-
23년	85	17	3	1	5	8	65	1	4	14	46	3	-
22년	79	24	7	3	8	6	52	2	4	10	36	3	-
21년	64	21	6	-	7	8	40	-	1	8	31	3	-

* 경합범죄로 6개월 이상 선고자 다수 있음

○ 수사 현황

(‘24. 7. 17. ~ ‘26. 4. 30., 단위: 명)

계	검찰송치	수사중	수사종결
258	213	44	1

* 병역의무 기피자 병무청 특사경 수사(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및 제6조, ‘24. 7.17. 시행)

□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 처벌 현황 : 31건, 4명 검찰송치 후 재판 등 진행중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금지 및 위반자 처벌 규정(병역법 제81조의3 및 제87조의2, '24. 5. 1. 시행)

○ 수사 현황

('24. 7. 17. ~ '26. 4. 30., 단위: 건)

계	검찰송치	수(내)사중	내사종결
82	31	26	25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무청 특사경 수사(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및 제6조, '24. 7. 17. 시행)

□ 제88조제1항(입영·소집 기피)

○ 처벌 현황

(‘21. 1. 1. ~ ‘25. 12. 31., 단위: 명)

구분	계	징역(실형)					집행유예					선고 유예	벌금
		소계	징역 1년6월 이상	징역 1년이상 ~ 1년6월 미만	징역 6월이상 ~ 1년미만	징역 6월미만	소계	징역 1년6월 이상	징역 1년이상 ~ 1년6월 미만	징역 6월이상 ~ 1년미만	징역 6월 미만		
계	1080	224	71	45	94	14	828	25	107	611	85	26	2
’25년	39	-	-	-	-	-	37	-	3	34	-	2	-
’24년	239	41	12	7	19	3	189	7	31	134	17	7	2
’23년	293	62	19	9	27	7	221	8	28	155	30	10	-
’22년	295	71	22	17	31	1	218	6	28	162	22	6	-
’21년	214	50	18	12	17	3	163	4	17	126	16	1	-

○ 수사 현황

(‘24. 7. 17. ~ ‘26. 4. 30., 단위: 명)

계	검찰송치	수사 중	수사종결
602	523	77	2

* 병역의무 기피자 병무청 특사경 수사(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및 제6조, ‘24. 7.17. 시행)